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 8. 10 선고 2020가단13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욱

변론 종결2021. 7. 13.

판결 선고2021. 8. 10.

주 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6. 6. 30. 접수 제94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8. 5. 27. 주식회사 D에게 C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등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D는 2008. 6. 27. 원고에게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양수한 C에 대한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이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2차85212)에서 'C은 원고에게 7,133,772원 및 그 중 2,367,776원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4. 19. 확정되었다.

라.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6. 6. 30.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6.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9.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합천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후인 2016. 4. C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것을 신청하였고, 2017. 8. 1. 집행문재도부여 신청을 하여 C의 재산을 조회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6483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2016. 4. 21. 위 법원이 C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7. 8. 1. 위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집행문재도부여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에 대한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의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C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 이전에 C에 대하여 재산명시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만으로 원고가 C의 재산상태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집행문 부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집행권원 정본이 집행권원의 원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존재하며, 집행권원의 내용이 집행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집행문을 내어주는 것이고, 집행문재도부여의 신청인이 집행문재도부여 단계에서 집행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및 집행문재도부여를 신청할 무렵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C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C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을 포기한 행위인데,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지원

별지